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28호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다. 환수조치, 사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7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정 (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lkj78@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정소식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